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94669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청구]

전 문

원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변론 종결2023. 3. 31.

판결 선고2023.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로서 2011. 1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B'라 한다)는 콘도미니엄업, 관광레저 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창원군 D 외 1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운영 중인 'E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외에 'F리조트', 'G리조트' 총 3개의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2) H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B 외에도 'T'를 운영하는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M'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등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왔다.

#### **나. 원고들과 B 사이의 입회계약**

1) B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8, 12, 14 내지 22 원고들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별지2 표 중 '입회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만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리조트'로, 입회보증금을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B에 위 입회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B와 Q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2001. 3. 31.부터 2011. 3. 31.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리조트로, 입회보증금을 3,582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7. 만기일을 5년 연장하였다. Q은 2016. 5. 29.

사망하였고(이하 '망 Q'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R, 자녀인 원고 S, 원고 T(별지2 표 순번 9, 10, 11)이 있다.

3) B와 원고 U(별지2 표 순번 13)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2002. 7. 13.부터 2012. 7. 13.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리조트로, 입회보증금을 3,9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 2), 3)항의 입회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 U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6608호로 B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11. 9. 'B는 원고 U에게 3,980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미이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5. 11. 28.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는 '입회금의 반환은 입회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반환 신청, 계약해지 요구가 없을 경우 위 입회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또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위 입회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와 같은 내용의 계약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5) B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권 등급에 따라 J, L, N, P이 운영하는 제휴 골프장들을 정회원 대우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비즈니스 플러스

제2조 비즈니스 플러스(1.5억 원) 회원혜택

##### ■ I, O

- 정회원1 + 동반인3
- 주중 월 4회 부킹 보장(월 4회 범위 내 위임 가능)
- 주말 월 2회 부킹 보장(토1, 일1/ 월 2회 범위 내 위임 가능)

<1팀 기준요금> 생략

##### ■ K

<1팀 기준요금> 생략

- 주중 월 4회(월 4회 범위 내 위임 가능)/ 주말 월 2회(월 2회 범위 내 위임 가능)
- 주말 월 2회 부킹 보장(토1, 일1)

#### ■ 비즈니스

제2조 비즈니스(1억 원) 회원혜택

##### ■ I, O

- 정회원1 + 동반인3
- 주중 월 3회 부킹 보장(월 3회 범위 내 위임 가능)
- 주말 월 1회 부킹 보장(월 1회 범위 내 위임 가능)

<1팀 기준요금> 생략

##### ■ K

## <1팀 기준요금> 생략

- 주중 월 3회(월 3회 범위 내 위임 가능)
- 주말 월 1회 부킹 보장(월 1회 범위 내 위임 가능)

### ■ 플래티늄

#### 제2조 플래티늄 골프리조트 회원혜택

- I 주중회원 혜택: 토요일/휴일, 공휴일 잔여타임 부킹 가능, 일요일 할인(월4회)
- V 정회원 혜택(주중/주말 부킹권 부여)
- K 주중회원 혜택(주중/주말 부킹권 부여)
- M 주중회원 혜택(주중 부킹권 부여)
- O 주중회원 혜택(주중 부킹권 부여)
- W 완공시 주중회원 혜택
- 가족회원 1인 등재
- 해외 제휴 골프&리조트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 ■ 프리미엄

#### 제3조 프리미엄 골프리조트 회원혜택

- ① I 주중회원대우: 주중 월4회 주중회원대우, 토요일 10시 이전 부킹가능
- ② X 정회원 대우
- ③ Y 준회원 대우
- ④ K 준회원 대우
- ⑤ O 준회원 대우
- ⑥ 해외 제휴 골프 리조트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 ⑦ 전국 Z 골프텔 정회원 대우

### ■ 골프텔

I 주중회원 대우(주1회)

V 코스 정회원 대우

K 퍼블릭 정회원 대우

AA 회원 대우

AB 회원 대우

호주 네 곳 CC 그린피 무료(5년간)

## 다. 이 사건 리조트의 매각 및 B의 파산

1) B 소유의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AC조합은 2017년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9.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창녕군수는 2019. 9. 24.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3) B는 2021. 8. 25. 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43호).

## 라.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1).

###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AE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3, 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8, 12, 14 내지 22 원고들의 주장

B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M 등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위 원고들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B는 위 원고들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입회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B 소유의 이 사건 리조트의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가 위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 나. 별지2 표 순번 9 내지 11 원고들의 주장

원고 R, 원고 S, 원고 T은 망 Q의 상속인들로서 망 Q이 B와 체결한 입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B는 위 원고들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입회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위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2).

#### 다. 별지2 표 순번 13 원고의 주장

원고 U은 B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총 7,562만 원(= 입회보증금 3,980만 원 + 지연손해금 3,582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분양 및 회원 모집을,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자격 없는 자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행위(제1호),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행위(제2호),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관광사업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제3호)를 각 금지하고, 한편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입회계약의 효력 및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해당 입회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구법 제19조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므로, 관광사업자가 구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라도 관광사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모집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구법 제8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517 판결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은 관광진흥법과 유사하게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관하여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와 달리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원을 일부 초과 모집하는 등 회원모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회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3)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회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규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더라도 그 입회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의 입회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가 관광숙박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계약인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리조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제휴 골프장에 대한 주중회원대우 등의 조건을 부가한 이용특약을 통해 체육시설인 골프장 회원의 자격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종류는 '비즈니스 플러스'(갑 제15호증의 1 등, 단, 명칭은 '비즈니스'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이 '비즈니스' 계약의 보증금보다 높은 1억 5,000만 원이고, 이용특약에 '비즈니스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 '비즈니스'(갑 제7호증의 1 등), '플래티늄'(갑 제3호증의 1 등) 등으로 나뉜다.

② 위 각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보증금이 다르고, 별도의 이용특약이 존재하는데, 위 각 이용특약에는 회원혜택으로 I 등과 같이 제휴 골프장의 주중회원대우 등(종류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의 종류 및 이용횟수 등의 혜택이 다르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종류별 이용특약은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③ 이렇듯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제휴 골프장의 준회원, 정회원, 주중회원 등과 같은 회원 대우를 포함하고 있다. B는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다른 혜택을 정하여 놓고, 이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④ 만약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오로지 관광숙박시설인 이 사건 리조트 또는 B의 다른 리조트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라 리조트의 예약가능 일수, 사용 가능 리조트의 범위 등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입회계약의 종류에 따른 리조트 이용 범위가 다르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용특약에 의하면 골프장 이용 범위, 주중 및 주말 이용 가능 일수 등이 다를 뿐이다.

⑤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 대우 혜택을 위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들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우선권만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굳이 더 비싼 입회보증금을 내고 비즈니스 플러스와 같은 고가 종류의 입회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⑥ B의 전 대표이사였던 H, AF 및 B는 2021. 11. 23. 관광숙박시설인 B의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 제휴 골프장에 대한 주중회원대우 등의 조건을 부가한 골프리조트 이용특약을 통해 체육시설인 골프장 회원의 자격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10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승계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B 사이에서 체결한 위 각 입회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인수인에게 승계되는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체결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일부 위반한 행위와 달리 같은 법 제82조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②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콘도미니엄 관광사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회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권리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회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이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제휴골프장을 회원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B에 지급한 입회보증금은 대부분 이 사건 리조트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체결 방식, 회원들의 가입 목적, 입회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회원들의

권리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납입한 입회보증금으로 형성된 재산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짐작되는 이 사건 리조트만을 인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법하게 모집된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측의 과중한 손해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허용하는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B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이진경**

**판사이동형**

**별지**

1)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사이에 관광진흥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제20조는 그 사이에 그 조문의 위치나 문구의 변경만 있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었고, 제8조는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된 것)부터 그 조문 위치나 문구의 변경만 있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었다.

2) 상속지분에 따라 입회보증금 3,582만 원에 대하여 원고 R는 15,351,428원(= 3,582만 원 × 3/7), 원고 S, 원고 T은 각 10,234,285원(= 3,582만 원 × 2/7)의 각 반환을 구한다.

3) 체육시설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